



#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및 Bloomberg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OECD on Fence Over Keeping Global Tax Reports Private \(Bloomberg TP Report vol. 27, no. 18, pg. 690\)](#)

#### OECD 국제 조세 보고서 비공개 유지

OECD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 조세에 대한 보고 자료(Global tax Report data)를 비공개로 유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인 논쟁에 있어 한 쪽 입장을 선택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동 보고 자료는 기밀로 유지하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국가별 보고서로 알려진 국제 조세에 대한 보고자료는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 조세 규정 개정 시 채택된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각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들의 세금, 수익 및 직원 수 등과 같은 재무 정보를 정부에 공개해야 합니다. 국가들은 6월부터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하기 시작하였으며, 각 국가의 과세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 및 조세회피에 대처하는 OECD의 BEPS Action 15 Plans 중 일부인 투명성 제고와 위험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보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국제 세무 조사의 증가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비정부 단체들과 조세회피 방지 활동가들은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9월 5일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Congress, "IFA") 행사인 제72차 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에서 OECD 세무국장인 파스칼 생-아만스(Pascal Sain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6 October 2018

#### KEY CONTACTS

#####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 백승록 상무이사

(Tel: 02-2112-0982)

##### 김태준 상무이사

(Tel: 02-2112-0696)

Amans)는 국가별보고서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OECD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가별보고서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국가들은 국가별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약 70개국에 국가별보고서 신고 의무가 있으며, 15 개국에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약 20개국이 국가별보고서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Post-BEPS issues with cost sharing arrangements in transfer pricing**

#### **BEPS 이후의 원가분담약정 이슈**

##### **OECD가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원가분담약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기업들이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변화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원가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또는 Cost Contribution Arrangements; 이하 “CCA”)은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이전가격 관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CCA는 통상 서비스 또는 IP 개발에 사용되며, 관련 기업들은 경제활동 자금을 분담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종종 법적인) 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CCA의 참여자들에게는 상호 효익이 기대됩니다. 개발 활동 및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보다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약정은 제3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 그룹 계열사 간 거래에도 사용됩니다. CCA는 많은 분야에서 체결되는데, 주로 석유 및 가스, 채굴 산업, 통신 및 금융 서비스와 같이 상당한 개발 비용이 필요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IP 개발의 경우 주로 특허권, 독점 기술 및 소프트웨어에 사용됩니다.

##### **OECD의 BEPS 프로젝트에 따른 개정**

OECD의 이전가격 원칙 상, CCA 하에서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여도 (contributions)는 예상되는 효익(benefits)에 비례해야 합니다. 그러나, BEPS 도입 이후 각 당사자들의 기여도 평가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CAA를 뒷받침하고 있는 경제적인 근거가 재검토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업데이트 또는 대체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P 개발단계에서 다국적 기업의 기여도는 대략적으로 IP 소유권(ownership of IP), 개발 기능(development functions), 투자 자본 (investment capital)의 세 가지 범주 중 하나입니다. BEPS 이후의 OECD 지침에 따르면, IP 소유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기능 없이

투자 자본만으로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없고, 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이 IP 관련 수익의 대부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기존의 CCA는 모든 참여자가 IP를 부분적으로 소유한다고 보기 때문에, 자금 기여도가 개발된 IP의 기대 효익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부가 가치 기능을 제공하는 각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이 CCA의 계약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동일한 입장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당 문제는 과세 당국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가별 보고서를 포함한 Action 13 문서화 준수 이행으로 과세 당국들이 더 많은 증거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거 과세 연도에 대하여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의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체결된 CCA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스스로 BEPS 체계 하에서 CCA를 소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KPMG는 이미 많은 대기업들의 원가문답 구조를 검토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CCA에 존재한 문제 해결 또는 재조정이 전체적으로 완벽한 점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소폭의 점진적인 변경이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간단한 단계를 통해 해당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1. 가치 사슬 중 다양한 요인을 비교하여 CCA 체결 대상이 되는 IP의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2. DEMPE (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and Exploitation) 및 기타 기능적인 기여도를 이해하고, 각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IP 보상을 평가합니다.
3. 평가된 기여도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CCA 보상을 비교합니다. (CCA 기여도를 바탕으로 산출된 이전가격에 반영)
4.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a) 체결된 CCA를 유지하고 CCA 관련 문서화를 통해 방어합니다.

- b) BEPS 이후 지침을 반영하여 체결된 CCA를 변경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비용과 관련된 mark-ups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CCA에서 특정 참여자를 제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c) 기존 체결된 CCA를 파기하고 다른 구조로 변경합니다.

KPMG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체결된 CCA 파기 및 변경 전략은 개발된 IP가 가치사슬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수행된 기능이 높은 가치를 지닌 경우에 더 적합합니다. 이외 중요한 요소는 주요 기능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는 그룹 내 전반적으로 분산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여러 국가에 걸쳐 위험이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결된 CCA를 관리하고 실행하는 그룹의 복잡성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 실무적인 어려움

상기 요구되는 해결 방법에 따라,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CCA는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법적 구조이며, 만약 계약이 변경될 경우 법적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을 변경할 경우 CCA를 사용하여(licence) 계약, 교차 사용하여(cross licence) 계약 또는 용역(service) 계약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둘째,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참여 대가 또는 탈퇴 대가(Buy-in or Buy-out payment) 산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이전가격 정책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업연도로부터 1년 내에 이전가격을 변경하는 것은 여전히 기업의 과세위험을 증대시킵니다.

재무 시스템에 대한 변경 관리 및 이전가격 운영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험 관리는 체결된 CCA를 검토하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아야 합니다. IP 개발 활동은 일반적으로 특허박스(patent boxes) 또는 R&D 세액 공제(R&D credits) 등 다른 국가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 계약을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충분히 얻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체결된 CCA들은 대다수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방관하게 될 경우 문제 해결에 있어 번거로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국적 기업들이 체결한 CCA들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사전대책을 강구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Panama: New version of form for transfer pricing report\*\*](#)

## 파나마: 새로운 이전가격 보고서 양식

### 업데이트 된 이전가격 보고서 양식

파나마 과세 당국은 이전가격 관련 양식 930(Formulario 930, "In Precision de Precios de Transferencia")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새로 업데이트 된 양식은 "버전 2.0"으로서, 2018년부터 이후 과세 연도에 해당하는 정보를 작성하는데 사용됩니다. 2018년 이전 과세 연도에 대해서는 "버전 1.0"이 사용됩니다.

이전가격 보고서 양식 930에는 납세자와 납세자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납세자와 기타 계열사 또는 그룹계열사 간의 거래조건에 대한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납세자가 독립기업원칙을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전가격 보고서 양식 930 제출 기한은 소득세 신고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새로 업데이트 된 버전 2.0에는 이전가격 보고서와 관련하여 기한 연장이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나, 납세자는 과세당국에 서면으로 제출된 이전가격 보고서의 "폐지/무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효가 승인되면 납세자는 보고서 제출 기한이 끝나기 전(즉, 이전가격 보고서 관련 과세 연도 종료 후 6 개월 이내)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 보고서 버전 2.0

이전가격 보고서 양식 930의 버전 2.0은 기존 버전 1.0에서 요청한 것 보다 더 자세한 정보와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이전 가격 보고서 버전 2.0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가 정상가격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정했는지 여부
- 무형자산의 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브랜드, 특히, 노하우, 소프트웨어 및 지적 재산 등의 사용 또는 향유를 위해 지불하거나 부과된 로열티수수료에 대한 정보
-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비교대상 정보
- 납세자가 제도 또는 특별 경제 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기업 구조조정, 합병, 인수 또는 매각에 참여했는지 여부
- 납세자가 차이 조정(Comparability adjustments) 전에 해당기간 동안 평균영업손실을 보이는 비교대상을 사용했는지 여부

- 납세자가 특정 상황 (예: 기업 구조조정, 합병, 인수 또는 매각)에 처한 비교대상을 사용했는지 여부
- 다음과 같은 비즈니스 그룹에 대한 정보
  - 비즈니스 그룹이 신고 사업연도 동안 구조조정의 대상이었는지 여부
  - 해외 특수관계자 정보
  - 관할 관청이나 법원이 해결한 이전가격 이슈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이전가격 이슈에 대한 조사(inspection)를 받았거나 받아오고 있는지 여부
  - 납세자가 이전가격 이슈에 대해 세무조사(audit)를 받고 있거나 받아오고 있는지 여부
  - 모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
  - 가장 최근의 과세 연도의 사업 그룹의 연결 수입 금액(모회사가 세금을 납부하는 국가의 통화 및 미국 통화로 보고되며, 이때 적용하는 환율의 해당 일자도 함께 보고됨)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이전가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수관계자 거래 총액의 1 %에 해당하는 벌금(최대 한도: 1백만 balboas)이 부과됩니다.

#### [삼정 KPMG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및 Global Korea Practice Conference 개최](#)

삼정 KPMG 는 2018 년 10 월 15 일에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16 일에는 Global Korea Practice Conference (이하 “GKP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정 KPMG 는 최근 투자 및 진출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및 멕시코 3 개국에 대한 진출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번 세미나는 각 국가의 KPMG 전문가들이 현지 투자환경과 함께 진출 전략, 법인설립 절차, 세무/회계 관련 이슈 및 투자 시 유의 사항 등 실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2018 GKP 컨퍼런스에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독일, 싱가포르 등 총 18 개국의 KPMG 파트너 및 멤버, Korea Desk 현지 담당자들 포함하여 총 61 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이후에 25 개 고객사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7회째는 맞이한 '2018 GKP컨퍼런스'는 각 나라의 전문가 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이슈에 따른 한국 기업의 Globalization 전략 방안을 논의하고, 협업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고객사 방문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이에 따른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입니다.

---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8 Samjong KPM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